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3. 5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2월 15일

나. 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운영위원회(2019. 2. 28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「제8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」이 결정·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“ [별표 2] ”로 함.(안 제3조제3항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개정(안 제4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·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·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  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   -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정액제에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관련 별표(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)에 의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토록 하는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며,
    - 안 별표 2에서는 2019년도 월2,762,570원,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동결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.
  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,
    -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어 개정하지 아니하고,
    - 여비는 조례에 규정된 별표를 삭제하고,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5에 따라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,
    -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.6%의 50%인 1.3%를 인상하고,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려는 것임.
    - 개정안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반하지 않으나,
    - 의원의 직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(要)하고 있고, 구민을 위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접·자주적으로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수를 전제로 의정활동

동비 등을 현실화 해야만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 
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

##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일

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 외 7명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「제8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」이 결정·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 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“ [별표 2] ”로 함.(안 제3조제3항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개정  
(안 제4조제2항)

### 3. 개정안 : “ 별첨 ”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

제8조, 『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』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2. 19. ~ 2. 25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원의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른  
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현행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3, 별표4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(월정수당 지급)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제4조(여비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하며 [별표 3]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 <p>2.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[별표 4]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여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원의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1.·2. (삭제)</p>								
<p>[별표2]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정 수 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64,5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 정 수 당	2,464,500원	<p>[별표 2]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차('19년도) 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762,57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5px;">비고 : 2 ~ 4년차('20 ~ '22년)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동결한다.</p>	구 분	지 급 액	1년차('19년도) 월정수당	2,762,570원
구 분	지 급 액								
월 정 수 당	2,464,500원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
1년차('19년도) 월정수당	2,762,570원								

현		행		개				정			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표3]</b>  <b>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)</b>  (단위: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철도 운임</th> <th>선박 운임</th> <th>항공 운임</th> <th>자동차 운임</th> <th>현 지 교통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인당)</th> <th>식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등포 구의원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20,000</td> <td>46,000</td> <td>2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.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예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  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 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인당)	식비 (1일당)	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	<p><b>[별표 3]</b>  &lt;삭 제&gt;</p>											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인당)	식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표4]</b>  <b>국외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2호 관련)</b>  (단위:달러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항공 임</th> <th rowspan="2">일비</th> <th rowspan="2">숙박 비</th> <th rowspan="2">식비</th> <th colspan="3">준 비 금</th> </tr> <tr> <th>15일 미만</th> <th>15일 이상 30일 미만</th> <th>30일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 장 부의장</td> <td>1등 정액</td> <td>35</td> <td>166</td> <td>107</td> <td>140</td> <td>170</td> <td>195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30</td> <td>145</td> <td>81</td> <td>130</td> <td>155</td> <td>18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  2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구 분	항공 임	일비	숙박 비	식비	준 비 금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	의 장 부의장	1등 정액	35	166	107	140	170	195	의 원	2등 정액	30	145	81	130	155	180	<p><b>[별표 4]</b>  &lt;삭 제&gt;</p>							
구 분	항공 임	일비	숙박 비	식비	준 비 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1등 정액	35	166	107	140	170	1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2등 정액	30	145	81	130	155	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